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40
------	-----

2009년 2월 24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월 21일,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
(2009년 2월 16일 상정·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기획관리실장 이화복)

- 가. 제안이유
 - 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교육장,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행정 체제를 구현하며, 그 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업무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서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(안 제1조).
-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·확대함(안 제5조).
- 지방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를 확대함(안 제5조제4호, 제6조제5호, 제7조제7호).
- 지방공무원에 대한 휴·복직 권한의 위임 범위를 확대함(안 제6조제16호, 제7조제14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」를 위해 추진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, 불합리한 지침 등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등의 정비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 차원의 통일성보다 지방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-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교육장,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행정 체제를 구현하며 그 밖에 행정권한 위임 업무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안 제1조는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서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한 것임.
- 다만, 동 법률은 2006년 12월 20일 전부개정 당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로 띄어쓰기가 정비되어 수정되었는 바, 동 조례안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용 법률의 제명 및 본문의 띄어쓰기 수정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.
- 안 제5조제4호, 안 제6조제5호, 안 제7조제7호는 각각 교육장, 소속학교장, 소속기관장의 지방공무원 검직허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, 현행조례에서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 권한만을 부여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당해 지역교육청, 당해 학교, 당해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검직허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학교자율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, 과도한 권한위임에 따른 남용 가능성과 관련하여,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, 해당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1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- 안 제5조제18의2호 중 “학교법인”과 관련하여,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감은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도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에서 “학교법인”으로 규정할 경우 “사립학교경영자”는 제외되므로 “학교법인”을 “학교법인(사립학교경영자 포함)”으로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.
- 또한 안 제5조제18의2호에 신설된 각목과 관련하여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1호에서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(각종학교를 포함)를 유지·경영하는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,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제1항에 의한 허가·신고수리 및 임원 취·해임 승인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,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규칙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, 사립학교법의 위임사무 일체를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는 것임.
- 다만, 「사립학교법」 제14조제5항에서 “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방이사에 대한 추천권은 여전히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. 따라서 개방이사의 추천 권한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동 목에 규정된 기타 위임 사항과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6조제16호 및 안 제7조제14호와 관련하여, 현재 교육공무원의 휴·복직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」(제6조제8호 및 제7조제5호)에서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, 동 조례안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소속학교장 및 소속기관장 등 하급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 것은 학교자율화 취지에 부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1조 본문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로 수정하여 띄어쓰기를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킴.
- 안 제5조제18의2호의 각 목에 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”을 추가하여 수정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